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03호 2017. 9. 29(금)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3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1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27호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공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4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5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 9. 29.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서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들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본다.

② 협의회 위원들이 권위된 경우 보궐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들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들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들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원만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건의 배부)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변경 전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 9. 29.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 를 “경우.” 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도” 를 “실직 등 위기 사유로 수도”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실직 등 위기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제3조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 9. 29.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服藥指導)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관련 단체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 9. 29.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3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원연구단체 마다” 를 “의원연구단체마다”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를 “의정운영공통경비” 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중간, 결과) 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중간·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중간·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 을 “제5조”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7명” 을 “9명” 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을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8조 중 “피 감사 기관” 을 “감사 대상기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피 감사자” 를 “감사 대상자” 로, “요구” 를 “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 감사자” 를 “감사 대상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 감사 기관장” 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개의” 를 “회의를 시작” 으로 한다.

제13조 중 “공무원등” 을 “공무원 등”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처분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기관장에게 적용한다.
2. 기관·부서경고: 구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처분이 필요한 경우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3. 훈계·주의: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며 훈계는 경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훈계·주의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및 표창 등 인사관리와 그 밖의 수혜적 조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제1호 중 “제반복무규정”을 “모든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민 자세”를 “대민 자세”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훈계 사유”를 “훈계 또는 주의 사유”로,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제8조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제5조)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업무담당자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공무원 등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② 대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③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④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제9조관련)

신청대상자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제10조 관련)

감 사 기 관 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 사 부 서 책임자 검토 의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총 합 의 건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제11조 관련)

건 명						
심 사 대 상 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 사 결 과						

20 . . .

면책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6호서식]

경 고(훈계·주의)장(제18조 관련)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327호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공고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77호(2009.6.8.),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304호(2011.12.5.)에 반영되어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8번지 일원의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8번지 일원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정비구역 명칭
 -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 명칭 :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용적률 (%)	건폐율 (%)	비 고
주택재개발	신현초교주변	신현동 288번지 일원	132,476	185	6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77호 (2009.06.08)

4. 해제 이유 및 근거

○ 해제 이유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해제 요청

○ 해제 근거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제2항제2호 가목

5. 의견제출

-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2),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 서식 : [붙임1] 의견제출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34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7. 9. 29. ~ 2017. 10. 13.(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39가2199외 14대 (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39가2199	오성*	2017.09.26	
2	인천30노6186	오봉*	2017.09.25	
3	48어0893	최경*(씨에스모터*) 상품용	2017.09.22	
4	66누3187	(주)그린아이씨*	2017.09.21	
5	09서6308	이선*	2017.09.18	
6	25머9518	김한*	2017.09.18	
7	57거1573	서명*	2017.09.13	
8	28부1282	송충*	2017.09.12	
9	60어9893	김희*	2017.09.11	
10	48마1431	강민*	2017.09.11	
11	15조1637	(주)토원토*	2017.09.11	
12	인천82다3811	심재*	2017.09.07	
13	28부4564	정창*	2017.09.06	
14	인천81나2075	박종*	2017.09.05	
15	60머6590	이명*	2017.09.0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35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18호(2010.4.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 : 주차장, 사업명: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내 주차 전용건축물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80-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	2	노외주차장	서구 오류동 1580-7번지	1,70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18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박 상 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 8번길 14, 301호(연희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인천 서구 오류동	1580-7	주	1,706	1,706	박상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 8번길 14,301호(연희동)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